

# 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내규

개정일 : 2023년 3월 28일

## 제1조(목적)

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경영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경영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장학위원회)

- ① 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 운영을 위해 장학위원회를 둔다.
- ② 장학위원회는 경영전문대학원 원장, 부원장, 학과장, 트랙주임교수로 구성한다.
- ③ 장학위원회에서는 경영전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 내규 등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- ④ 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근거하여 심의를 통해 운영한다.

## 제3조(장학금 종류)

경영전문대학원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지정장학금
- ② 선발장학금
  1. 신입생장학금
  2. 재학생장학금 (성적장학금, 봉사장학금, 공로장학금)

## 제4조(지정장학금)

- ① 본교 졸업생, 한양대병원/한양여대/한양사이버대 직원, 공무원 및 군·경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0%를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- ② 협약기관 파견 학생은 협약에 의거하여 해당 학기 등록금의 50% 이내에서 학비감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①항과 ②항의 지정장학금 지급 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여 적용한다.

## 제5조(선발장학금)

- ① 신입생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  1.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 각 트랙별로 신입생장학금 예산을 배정한다.  
(해당 트랙의 지정장학금, 본부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닌 내·외국인 선발인원) \*  
(해당 학기 내국인 재학생 등록금의 15% 금액)
  2. 신입학전형 평가점수를 심사기준으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비감면

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
3. 추가모집 신입학전형을 실시할 경우, 일반모집과 추가모집의 트랙별 선발자가 모두 확정된 후 함께 심사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.

4. Hanyang MBA의 경우 과정 단위로 신입성장학금을 배정 및 지급한다.

② 재학생장학금에는 성적장학금, 봉사장학금, 공로장학금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.

1. 성적장학금

가. 아래의 산출식에 의해 각 트랙별로 성적장학금 예산을 배정한다.

(해당 트랙의 내·외국인 재학 인원) \* (해당 학기 내국인 재학생 등록금의 3% 금액)

나. 직전 학기 장학용 평균 평점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하며, 동점자일 경우 직전 학기 과목별 최종점수(P/F 평가 과목 제외)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.

다. Hanyang MBA의 경우 과정 단위로 성적장학금을 배정 및 지급한다.

2. 봉사장학금은 해당 학기 내국인 재학생 등록금의 5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전 학기 원우회에 배정하고 원우회에서 제출한 장학금 배정안을 장학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하여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원우회장의 경우 등록금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한다.

3. 공로장학금은 본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재학생에게 지급하며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6조(장학금 수혜자격의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한다.

- ① 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기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
- ② 선정된 장학생이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
- ③ 학업연장 등과 같이 본인의 선택 혹은 과실로 인해 학칙에 규정된 정규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

## 제7조(중복지급 대상자 관련)

- ① 학비감면 장학금은 중복지급을 금지하며, 재학생이 복수의 장학금에 지급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해당 재학생에게 유리한 장학을 선택하여 적용한다.
- ② 소속 회사 등에서 학비 지원을 받는 재학생은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성적장학생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. 행정팀에서는 매 학기 종료 후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 신청을 접수하고 장학위원회는 신청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심사한다. 다만, 성적장학금 지급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학금은 학비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.

## 제8조(장학금 포기 및 대체자 선발)

-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장학금의 수혜를 포기할 수 있으며, 수혜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포기 각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한다.
- ② 위 ①항에 의해 포기된 장학금은 교체자를 선정하여 지급될 수 있다.

### 제9조(기타)

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① (제4조) 지급대상 : 위 각 항에 명시된 규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4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6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12 월 7일부터 시행한다.
- 7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8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- 9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10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- 1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12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1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13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